

#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2-113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(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)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마포복지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
다. 출연 필요성

- 마포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,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보통재산 출연 지원
- 지역자원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모금·배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및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

라. 출연금액 및 내용

- 출연금액 : 1,525,564천원
- 출연내용 : 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 지원
  - 기본재산 : 1,000,000천원
  - 보통재산 : 525,564천원

· 인건비 371,280천원, 운영비 131,084천원, 사업비 등 23,200천원

【 출연금 내역 】

(단위: 천원)

구분		예산액	세부내용	비고
<b>합계</b>		<b>1,525,564</b>		
복지재단 기본재산		1,000,000	· 기본재산 적립	
복지재단 보통재산		525,564		
복지재단 운영	인건비	371,280	· 기본급여, 제수당, 퇴직급여충당금	
	운영비	131,084	· 사회보험료, 급식비, 공공요금 및 제세, 수도 광열비, 도서인쇄비, 회의운영비, 소모품비 등	
	사업비 등	23,200	· 복지재단 홍보 및 나눔활성화 사업, 네트워크 구축 사업, 연구개발 등	

※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23년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결정

### 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)

### 4. 연도별 출연현황

(단위: 천원)

회계연도	출연금			비고
	계	기본재산	보통재산	
2022년	999,181	500,000	499,181	
2021년	2,106,235	2,000,000	106,235	